

속초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331
----------	---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08. 8. 26.

발의 의원 : 이금자 의원外 6인

□ 제안사유

-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명예 선양과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

□ 주요내용

- 가.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 및 조직된 단체의 정의 (안 제2조)
- 나.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의전, 표창 등의 예우 명시 (안 제3조)
- 다.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지원 (안 제4조)
- 라.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명시 (안 제5조)
- 마. 다른 법령·조례 등에 의거 예우 또는 지원 받은 경우 중복 지원 금지 (안 제7조)

□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2조(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)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 의견(2008. 7. 4) : 별첨
- 조례안 제5조(지원대상사업)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수정 집행부 의견(2008. 7. 29) : 별첨
- 관련법규 :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 제5조, 제6조, 제16조

속초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「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」 제16조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재향군인”이라 함은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.
2. “재향군인회”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“속초시재향군인회”(이하 “재향군인회”라 한다)를 말한다.

제3조(예우) 속초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.

1.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
2.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
3.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예산지원)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대상사업)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가를 위하여 희생·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
2.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및 안보현장 순례사업
3. 시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
4. 중·고교학생 병영체험활동 지원사업
5. 태극기 달아주기 운동사업
6. 6.25전쟁 기념사업 및 전적비 관리사업
7. 지역사회 봉사활동사업

제6조(지원신청 및 보고)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「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」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중복지원 금지)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거 제3조와 제5조에서 정한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해 지원하지 아니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관련법규】

大韓民國在鄉軍人會法

[일부개정 2001.1.8 법률 제6348호]

第5條 (會員의 資格) 會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 하는 者로 한다.

<개정 1973.10.10, 1992.12.2, 2000.12.26>

1. 陸軍·海軍 및 空軍의 豫備役
2. 補充役 또는 第2國民役으로서 召集되어 軍服務를 마친者
3.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退役 또는 兵役이 免除된 將校·准士官·副士官 및 兵

第6條 (組織) ①在鄉軍人會에 本部, 市·道會, 市·郡·區會 및 邑·面·洞會를 두며,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職場에 근무하는 者를 위하여 職場規模에 따라 職場支會·聯合分會 또는 分會를, 海外居住者를 위하여 地域別 規模에 따라 海外支會·聯合分會 또는 分會를 둘 수 있다.

②在鄉軍人會는 本部를 首都圈에 두며, 特別市·廣域市 및 道에 市·道會를, 市·郡·區(自治區에 한한다)에 市·郡·區會를, 邑·面·洞에 邑·面·洞會를 둔다. <개정 1997.1.13>[전문개정 1992.12.2]

第16條 (財政) ①在鄉軍人會의 財政은 會員의 會費·事業收入 기타 收入으로써 充당한다. <개정 1992.12.2>

②國家는 在鄉軍人會의 運營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補助金을 交付할 수 있다. <개정 1997.12.24>

③地方自治團體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在鄉軍人會의 사업에 대하여 補助金을 교부할 수 있다. <신설 1997.12.24>